

『구미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감면목적의 실효성이 낮은 감면의 폐지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7~10인승 비영업승용자동차세에 대한 감면규정 중 경감 후 산출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 적용세액보다 적은 경우 종전의 승합자동차세액으로 부과하는 규정을 단서규정으로 신설함(안 제17조)
-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출자법인과 함께 출연법인도 감면토록 규정함(안 제20조)
-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삭제(안 제27조)
- 동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시한을 3년 연장하여 2009년까지로 연장함(안 부칙제2조).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세법」 제7조, 제9조, 제112조, 제188조, 동법시행규칙 제114조의3, 제115조

-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16조
- 「문화재보호법」 제4조, 제6조 내지 제8조, 제42조제1항
- 「주택법」 제9조제1항제6호
- 「임대주택법」 제2조, 제12조,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3호, 제30조, 제32조
-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3조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의2, 제28조의5
-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7조
-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17조
-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3조
- 「화물유통촉진법」 제2조
- 「전쟁기념사업회법」 제5조
-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
- 경상북도 세정과-1726(2006.11.01)호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(행정자치부)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구미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감면목적의 달성, 실효성이 낮은 감면의 폐지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임
- 주요 개정내용은
 - 감면시한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
 -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 승용자동차세에 대한 감면규정 중 경감 후 산출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 적용세액보다 적은 경우 종전의 승합자동차세액으로 부과하는 규정을 단서규정으로 신설하고

- 지방공사 등에 에 대한 감면규정 중 자치단체 출자법인과 함께 출연법인도 감면토록 규정하였으며
 -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유사한 타공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삭제하고
 - 관련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용어 및 법조항 등 조문일부를 정비하였음
-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 개정안에 준하여 개정된 조례안입니다.